명지전문대학부속명지유치원규칙 8-1-1

규정번호 8-1-1
제정일자 1999.3.1
최근개정 2024.4.1
개정차수 8차 개정
관리부서 명지유치원

[전면개정 2019.6.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서울특별시 유치원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등에 의거하여 유아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1.,2019.11.25)

제2조(명칭) 본원은 명지전문대학 부속 명지유치원이라 명한다.(개정 2019.07.01)

제3조(위치) 본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2길 37(홍은동)에 위치한다.(개정 2019.07.01)

제2장 교육연한 및 학기·휴업일

제4조(교육연한) 본원의 교육연한은 만 3세 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각 연령별로 1년으로 한다.(개정 2019.07.01)

제5조(학년도 및 학기) ① 본원의 학년도는 유아교육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19.07.01., 2022.08.08)

②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9.07.01., 2022.08.08)

③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19.07.01)

제6조(휴업일) ① 본원의 휴업일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7.01)

1. 토요일(개정 2019.07.01)
2.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개정 2019.07.01)
3. 개원기념일(개정 2019.07.01., 2022.08.08)
4. 자율휴업일(개정 2019.07.01)
5. 방과후과정 여름·겨울방학(개정 2019.07.0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개원기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을 휴업일로 정한다.(개정 2019.07.01)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자율휴업일은 연간 수업일수를 고려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9.07.01)

④ 원장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하고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한다.(개정 2019.07.01)

⑤ 제1항의 휴업일이라도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07.01.,2024.4.1.)

⑥ 제5항에 따라 유치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은 수업일수에 포함하며, 그 수업일수만큼 대체하는 휴업일은 행사 개최일 전·후로 정한다. (신설 2024.4.1.)

제3장 학급 편제 및 유아 정원

제7조(학급 편제) ① 본원의 교육과정·방과후과정 학급 수는 6학급으로 한다.(개정 2019.07.01)

② 방과 후 과정 학급은 독립편성 전일제와 오후재편성으로 운영한다.(신설 2019.07.01)

제8조(유아정원) ① 본원의 유아정원은 170명으로 한다.(개정 2019.07.01)

② 본원의 한 학급의 유아 정원은 서울특별시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편성·운영한다.(신설 2019.07.01)

제4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개정 2022.08.08.)

제9조(교육과정 등) ① 본원은 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개정 2019.07.01., 2022.08.08)

② <삭제(2022.08.08.)>

③ 본원의 교육내용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본원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신설 2022.08.08.)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개정 2019.07.01)

제10조(수업일수) ① 본원의 수업일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한다.(개정 2022.08.08.)

1.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업일수의 10분의 1(신설 2022.08.08.)
2. 법 제31조제1항 · 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신설 2022.08.08.)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국가

에서 정하는 범위를 고려하여 해당 학년도의 수업일수로 인정한다.(신설 2022.08.08.,개정 2024.4.1.)

③ 제2항 외의 출석을 인정하는 결석은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등에 따르며, 국가에서 정하는 범위를 고려하여 해당 학년도의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신설 2024.4.1.)

제11조(수업시간) ① 본원의 교육과정 수업시간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유아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달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본원의 방과후과정 수업시간은 교육과정 수업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편성·운영한다.

③ 본원의 교육과정·방과후과정 수업시간은 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 교육 내용, 유치원의 실정, 학부모의 요구, 계절·기후, 기타 상황 등에 따라 수업시간을 단축·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수업 운영방법) ① 본원은 유아의 발달과 흥미를 존중하는 아동중심 교육 사상에 근거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바른 인성을 가진 유아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일상생활에서의 놀이를 중심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여 수업을 운영 한다.

② 본원은 지역사회·전문가·초등학교 학생 등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업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③ 교육상 필요한 경우 방송프로그램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업 연구 및 장학) ① 본원의 교원은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놀이중심의 수업을 연구한다.

② 본원의 교원은 외부 연수, 자격연수. 대학원 진학 등으로 지속적인 자기발전을 실시한다.(개정 2022.08.08.)

③ 본원의 교원은 내부·외부 교육과정 연구 진행 시 적극 협조한다.

④ 본원의 교원은 자기장학과 임상장학을 통하여 수업 계획, 관찰, 평가 등에 상호적으로 도움을 준다.

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임학 (개정 2019.07.01.,2024.4.1)

제14조(입학 연령)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와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유예 받은 자로 한다.

제15조(입학 전형) ① 본원은 국가의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으로 공개추첨하여 입학자를 선발한다.

② 본원에 재원 중인 유아가 다음 학년도에 상위 연령의 학급에서 재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공개추첨 없이 우선 수용한다.

제16조(재입학·편입학·전입학) ① 학기 도중에 재입학, 편입학, 전입학하는 시기는 학급별 정원에서 결원 발생 시 수시로 할 수 있다.(개정 2024.4.1.)

② 제1항에서 발생되는 학적처리는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신설 2024.4.1.)

제7장 퇴학·휴학·전출·휴학 (개정 2019.07.01)

제17조(퇴학·자퇴·전출) ① 원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장기결석하는 자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개정 2022.08.08.)

② 유아의 주소지 이전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자퇴 또는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퇴원서를 받아 처리한다.(개정 2022.08.08.,2024.4.1)

제18조(출석의 정지·휴학) ① 원장은 유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출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조명변경 2024.4.1.)

1.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으로 출석을 하여 다른 유아들의 교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2. 전염성 질병의 감염으로 다른 유아에게 전염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기타 사유로 다른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출석 정지를 받은 유아가 재출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다른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시 출석을 허가한다. 단, 제1항제2호의 전염성 질병으로 출석이 정지된 유아의 경우에는 의사의 전염성 질병 완치 소견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출석을 허가한다.

③ 제1항의 출석정지 사유 외에 기타 사유로 원장이 휴학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1개월까지 휴학할 수 있으며,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복학 처리한다.(신설 2024.4.1.)

제8장 수료·졸업 (개정 2019.07.01)

제19조(수료) ① 본원의 만 3세 및 만 4세 유아가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학년도 종료일)까지 학적을 보유한 경우 수료를 인정한다.(개정 2024.4.1.)

② 만 3세 및 만 4세 유아 중 유아의 발달 상태 등의 사유로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기존 연령의 학급을 재수료 할 수 있다.

③ 학년도 시작 이후 입학하는 유아도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학년도 종료일)에 학적을 보유한 경우 수료를 인정한다.(신설 2024.4.1.)

제20조(졸업) ① 본원의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까지 학적을 보유한 경우 졸업을 인정한다.(개정 2024.4.1.)

② 만 5세 원아 중 취학의무 면제·유예된 유아의 경우 기존 연령의 학급을 재수료 후 졸업 할 수 있다.

③ 학년도 시작 이후 입학하는 유아도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학년도 종료일)에 학적을 보유한

경우 졸업을 인정한다.(신설 2024.4.1.)

제21조(수료·졸업대장 관리)각 학급별 담임교사는 매 학년도 종료 전에 수료·졸업 유아를 대상으로 수료대장·졸업 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준영구 보관한다.(개정 2022.08.08.)

제9장 교육비의 징수 (개정 2019.07.01., 2022.08.08)

제22조(무상교육) ①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직전까지의 유아에 대하여는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교육비) ① 본원의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간식비, 통원차량비의 항목으로 징수하며 금액은 유아교육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거한 교육부 고시를 준수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② 교육비는 사립학교 학교회계 예·결산 편성 지침과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 준하여 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9.11.25.)

③ 교육비의 항목은 유치원 실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신설 2022.08.08.)

제10장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 (신설 2019.11.25.)

제24조(봉급의 책정) ① 본원 교직원(정교원, 행정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 학교회계 예·결산 편성 지침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

② 계약직원(무기계약 포함)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은 기여도, 담당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준하여 책정한다.

제25조(봉급지급방법 및 지급일) ① 교직원 및 계약직원의 봉급은 본인에게 직접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교직원 및 계약직원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③ 계약직원 중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맺은 자와 강사의 경우에는 매월 말일에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지급한다.

④ 봉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명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봉급계산) ① 교직원 및 계약직원의 보수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면직, 승진, 감봉 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봉급 및 각종 수당의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교직원의 경력·업무 난이도 및 기여도에 따라 일부 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08.08.)

제27조(교원의 봉급 및 수당)① 교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따라 교원의 획정된 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원장의 봉급은 주근무지(대학)에서 수령하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 학교회계 예·결산 편성 지침 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2.08.08.)

③ 원감 및 교사의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근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교직수당, 보직교사수당, 담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원연구비, 직급보조비(원감) 등을 지급한다.(개정 2022.08.08.)

④ 교원의 각종 수당 등에 대한 계산방법 및 지급금액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 학교회계 예·결산 편성 지침을 준용한다.

제28조(행정직원의 봉급 및 수당)① 행정직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따라 행정직원의 획정된 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행정직원의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근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한다.

③ 행정직원의 각종 수당 등에 대한 계산방법 및 지급금액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 학교회계 예·결산 편성 지침을 준용한다.

제29조(계약직원의 봉급 및 수당)계약직원의 봉급 및 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30조(기타사항)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 학교회계 예·결산지침, 명지학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신설 및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기타 제수당 및 성과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장이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장 유치원운영위원회 (개정 2019.07.01.,2019.11.25)

제31조(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개정 2022.08.08.)

제12장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장 신설 2023.12.11.)

제32조(운영 기준) 본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은 교원의 지

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른다.(조 신설 2023.12.11.)

제33조(물품 분리보관) ① 유아가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 할 수 있다.(조 신설 2023.12.11.)

② 다만, 유아가 제4호의 개인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가 담임교사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교육활동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는 동물 또는 완구류 등
4. 개인 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5. 기타 전자기기(카메라, 녹음기 등)

제13장 그밖에 관할청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9.07.01.,2019.11.25)

제34조(기타 관할청이 정하는 사항) 본원은 그밖에 관할청이 정하는 사항이 있을 시 이를 규칙에 반영한다.

제35조(유치원생활기록) 본원은 유아교육법 제14조 및 교육부 고시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한다.

제36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 본원은 유아교육법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관리하고,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는 유아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유치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개정 2022.08.08.)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치료·격리 또는 휴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본원은 유아교육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적합한 간식과 급식을 제공한다.(개정 2022.08.08.)

제37조(교원의 배치) ① 본원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원장 1인, 원감 1인, 학급별 담임교사를 1~2인을 둔다.

② 교원은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한다.

③ 본원의 교사 중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제38조(직원의 배치) 본원은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 행정직원, 보조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통원차량 운행기사, 미화, 시설 담당 직원 등을 둘 수 있으며, 본원의 운영상황 및 예산을 고려하여 배치인원을 정한다.(개정 2022.08.08.)

제39조(강사 등) 본원은 유아교육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강사, 기간제 교사 등을 둘 수 있다.

제40조(유치원회계) 본원의 회계는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립학교 학교회계 예·결산 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제14장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개정 2019.07.01.,2019.11.25)

제41조(유치원규칙의 개정)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개정할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개정할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관할청에 변경인가를 받는다.(개정 2019.11.25.)
③ 기타 운영사항은 세부규정으로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08.08.)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실시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에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 제23조제3항, 제26조, 제27조, 제31조, 제34조, 제36조, 제39조)

부 칙

①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12장제32조제33조)

② 제12장 신설에 따른 후단조항은 장번호 및 조번호를 변경한다.(제12장~제13장을 제13장~제14장으로, 제32조~제39조를 제34조~제41조로 변경)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5항·제6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6장, 제16조, 제16조제1항·제2항, 제7장, 제17조,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3항)